

기만인가 타협인가 --- 임진왜란의 외교적협상

평인대학교 정결서

임진왜란(壬辰倭亂(文祿·慶長の役))은 1592년(만력萬曆20) 4월에 일본 육군이 부산에 도착한 후로부터 시작되었고, 1598년(만력 26년) 11월에 일본군이 명(明)과 조선(朝鮮)의 연합공격으로 철수할 때까지 거의 7년 동안 지속하였다. 전쟁의 실제 상황은 총 2년이었는데 평화 협상은 4년동안(1593-1597) 지속하였다. 이 시기에 명과 일본은 한반도의 군사분쟁을 조정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재건하기 위한 외교적 교섭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실패로 끝났다.

전쟁 당시의 외교적 교섭에 관한 기존 학계의 일반적 견해는, 서로의 평화조건이 너무 달라서 타협의 여지가 없었지만, 양측 외교 단체가 음모기만(陰謀欺瞞)을 외교적 협상의 수단으로 여기고 본국의 통치자에게 거짓 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통해 협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책봉(冊封)은 실패하고 전쟁은 다시 시작되었다.

의심할 여지없이 외교활동은 양측의 외교대표를 협상의 주체로 삼는다. 협상 과정에서 형성된 정보는 상부여로의 보고를 거쳐 여러 번 필터링 되기에 양국의 최고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가 어려우며, 그런 의미로 기만(欺瞞)의 혐의가 있었다.

예를 들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대명일본평화조건(大明日本和平条件)"에서 7가지 평화조건을 제기했는데, 몇 차례의 외교교섭과 정보 필터링을 통해 명나라에는 핵심 요구가 '책봉(冊封)'으로 전달되었으며, 결과 명조를 속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명조의 "봉(封)은 허락하지만 공(貢)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대일정책은 두 나라 사절의 여러 해석을 통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는 "책봉체제에 들어간 다음에 감합무역(勘合貿易)을 실현한다"는 기대를 줬다. 여기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속인' 가능성을 부정 못 한다.

그러나 명, 일본, 조선의 역사자료, 특히 당시의 문서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 협상 과정에서 명과 일본은 평화 조건을 조정했고 상대방과 타협을 했다. 명 측은 일본군에게 조선 철수를 요구하는 것 외에도 일본과의 '책봉' 관계를 재개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으며, 최종승인결의안은 "봉(封)은 허락하지만 공(貢)은 용서하지 않는다"였다. 원래 약속 한 '공(貢)'은 철회됐으며 일본의 상황은 점점 더 까다로워졌지만 아직 실용적인 조정 여지는 남아있었다.

일본 측은 외교 협상에서 명과 조선에 어느 정도 타협을 했지만, 여전히 조선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려고 했다. 일본의 외교활동은 동아시아의 책봉체제로 돌아가려는 양상을 보이면서도 국제적 지위를 향상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그러나 명과 조선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동아시아 평화문제는 다시 무력으로 해결되게 되었다.

1. '병부첩(兵部帖)'과 왕경(王京)의 일본군 철수

평양전투 이전에 명나라와 일본은 이미 평화 문제에 관한 교류가 있었다. 1592년(만력 20년) 8월 29일 명의 간첩인 심위경(沈惟敬)은 평양 외곽의 마른 언덕 아래에서 평양을 지키던 일본군 장군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협상을 가져 50일간의 정전협정을 맺었다. 명나라 시각에서 보면 이 협상은 공식협상이 아니었으며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 일본군이 제기한 몇 가지 문제는 이후 협상에서도 이어졌다.

첫 번째 문제는 일본과 명 간의 조공朝貢문제이다. 일본 측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若許朝貢，且令日本、朝鮮兩國通好，則朝貢之路，欲於朝鮮內往來”.

두 번째 문제는 조선의 영토 문제이다. 일본 측은 ‘愿退出平壤，以大同江爲界’，즉 평양에서 철수하고 대동강을 경계로 조선을 분단하여 영토 대부분을 가지려고 했다.

세 번째로는 조일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일본 측은 조선이 일본에 배신조공陪臣朝貢형식으로 조공한 적이 있으며, 중일관계는 종번 관계宗藩關係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심위경은 9월 29일 베이징으로 돌아와 일본 측의 조공 영토 요청을 "내각內閣과 본병本兵"에 보고했다. 이는 명조의 「閣部九卿科道會議」 개최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요청에 대한 대책이 회의 후에 ‘병부첩兵部帖’에 정리되었다. ‘병부첩兵部帖’은 일본과 조선의 조공문제에 대해 “尔國誠欲通貢，豈必假道朝鮮？敕下廷議，若別無情故，必查開市舊途，一依前規，覆請定奪。于時先封諸將或爲日本國王，封諸僧或爲日本國師，皆未可知，顧爾誠意如何”， 일본 측에 ‘성의誠意’가 있다는 전제 아래 명조는 ‘정의廷議’를 거쳐 ‘依前規(이전처럼)’ ‘開市(무역을 재개)’하기려 했다. 이는 ‘봉封(책봉冊封)을 전제로 ‘先封後市(貢)’의 순서로 실시하고, 명명성조成祖와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 삼대장군三代將軍 아시카가 요시미즈足利義滿가 만든 명조와 일본의 ‘봉공封貢’ 관계에 복귀하도록 했다.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병부첩兵部帖’은 일본 측이 “所掠朝鮮王子女，平壤、王京地方俱還朝鮮，罷兵回巢，恭听朝命”라고 정했다. 포로가 된 조선 왕자의 석방문제와 조선영토의 반환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영토문제와 관련해서 ‘병부첩兵部帖’이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罷兵回巢’는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수하기를 요구하는 표현이지만 반환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조선영토는 ‘평양平壤，왕경王京지방’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측의 ‘愿退出平壤，以大同江爲界’보다는 전진이 있으나, 조선땅 모두를 반환하라는 내용은 아니다. 이런 ‘병부첩兵部帖’의 틈새를 발견한 일본은 조선 일부만을 반환하면 좋다는 기대를 했다. 이것은 한강을 경계로 하는 ‘중분조선中分朝鮮’설의 토대가 되었다.

같은 해의 11월 26일, 심위경은 ‘병부첩兵部帖’을 가지고 평양에 가서 일본 측과 다시 협상했다. 일본 측은 ‘병부첩兵部帖’의 ‘구공求貢’문제에 관해서는 아무 말을 안 했지만, 영토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愿將平壤、王京一帶還天朝不與朝鮮(평양平壤，왕경王京지방을 반환하는 문제는 받아들이겠다)’.

당시, 일본 침략군이 평양을 함락하고 함경咸鏡에까지 깊이 들어가 조선을 거의 점령했지만 점령 구의 통치상태는 안정되어 있지 않았다. 일본은 조선에 ‘更修隣盟’이라는 제안을 하고 외교교섭을 통해 하나나 둘의 도道를 조선에 반환하는 대신 일본이 조선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시키려고 했지만, 조선 측은 이에 반발했다. 대국인 명에게 영토의 유혹을 주고 조선을 나누는 안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합리성이 컸다. 그러나 이는 명의 ‘字小存亡’의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을 거절한 명신宗明神宗은 宋応昌에게 ‘相機剿除，以絶后患’이란 지령을 내렸다. 이 전략 아래 명의 지원군이 조선에 들어가 다음 해 1월의 평양성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평양에서 전쟁이 있는 직후 명과 조선은 일본과 외교 협상을 하려고 했다. 예를 들어 조선은 심위경에게 일본 측과 협상하여 두 왕자를 반환하도록 설득 할 것을 제안했다. 馮仲櫻과 金相이 參画袁黃의 의뢰를 받아 함경도에서 카토 키요마사 와 협의해 왕자

를 반환하도록 교섭했다. 王宗聖이 왕경성에 들어가 일본군이 철수할 것을 요하도록 송응창에게서 의뢰를 받았다. 그러나 심위경은 기용되지 못했고 馮仲櫻, 王宗聖의 일본군의 설득도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비정관碧蹄館의 전투 후 양측은 교착단계에 들어갔다. 3 월초 코니시 유키나가는 심우경에게 서한을 보내고 '懇求封貢東歸' 라는 의사를 전달 했으며, 송응창은 심유경을 정식으로 기용하고 세번째 일본진영 방문을 명령했다.

송응창의 평화조건은 "尽还朝鲜故土, 并还两王嗣以及陪臣等, 归报关白上章谢罪, 本部即当奏题封尔关白为日本国王"이었다. 앞의 「병부첩」과 비교하면 조선의 왕자반환, 배신陪臣문제에 관한 주장은 같았지만, 아래 세 조건이 달랐다. 첫번째는 명조의 봉공문제이다. 「병부첩」에서는 「開市」와 「봉」이 제시되었지만, 송의 제안에서는 「봉」만이었다. 두 번째는 조선 영토문제. 영토요청의 범위는 「평양, 왕경지역」에서 조선 전국에 변경되었고, 일본에 「尽还朝鲜故土」(되도록 빨리 조선 국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는 평화성립의 전제조건으로서 「関白上章謝罪」를 덧붙이는 것이다. 봉공문제에 관해서 송응창은 처음에는 「봉」만을 주장했지만, 일본 측과의 교섭을 경험한 심유경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조정을 하고, 「병부첩」의 「先封後市」에 되돌아갔다. 그리고 「題本請旨, 封关白为日本王, 使之由宁波入贡」의 의사를 일본측에 전했다. 송응창은 당초 「釜山、熊川一帶, 原系日本旧据之地, 其民皆系倭户, 自弘治、正德年間, 朝鮮已置此地于度外」、「故今倭遁于此, 是已归其巢穴」라는 사실오인을 했기에 「부산, 웅천」를 일본 영토로 간주하고 조선 남부에 있어서의 일본군의 거점보류를 묵인했다. 송응창이 요청한 「尽还朝鲜故土」는 일본군이 조선 남부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했다.

사실상 일본군은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고 불리한 군사정세에 직면하고 있었다. 게다가 조선을 원조하는 명군에서의 공격을 수로와 육로의 양쪽으로 받게 되면 조선 남부 연해일대에로의 철퇴 안은 염두에 있었다. 이러한 경위로 일본군의 철병을 둘러싼 합의를 이룰 수가 있었다. 심유경이 일본군과 함께 부산에 이동하는 반면에, 명의 사절인 謝用梓、徐一貫이 일본을 향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와의 직접 협상을 했다. 두 사람은 그 후 일본의 사절 조공을 寧波 경유의 코스로 안내한다. 심유경이 왕경에 들어간 후, 일본측이 포로가 된 조선의 왕자와 신하를 돌려주고 명은 일본측에 「小將」을 인질로 낼 것을 요구했다. 가토 기요마사가 2 만량의 은을 왕자석방의 몸값으로서 징수했다.

일본군은 4 월 19 일에 왕경에서 철퇴하고, 심유경, 謝用梓、徐一貫들을 데리고 부산에 남하했다. 그러나 조선의 왕자, 신하를 반환하고, 「小將」를 인질로 내보낸다는 약속은 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명은 외교적으로 수동적 입장이 되었다. 謝用梓、徐一貫들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고, 규슈의 나고야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만나 「大明日本和平条件」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정식담판에 나섰다.

2.기만 또는 타협 : 《대명일본평화조건》을 둘러싼 외교협상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명일본평화조건」 7 항목을 둘러싸고, 심위경이 「七事已曾暗許」(7 항목은 이미 승낙했다)는 말이 명나라 조정에 퍼졌다. 심위경이 독단으로 도요

토미 히데요시에 7 항목의 평화 조건을 받아들이고, 명나라 조정을 속였다고 여겨졌다. 周孔教가 兵部尚書石星을 탄핵했을 때, 『亟賜议处欺误之臣以弭祸乱疏』에서 「乃信沈惟敬之邪说, 许七事而讲随倭术中」이라고 호소하고, 심위경 뿐만 아니라 石星도 독단으로 7 항목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인학자 기타지마 만지北島万次는 명나라 권봉사절 楊方享가 권봉실 패후, 明神宗에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명일본평화조건」을 보고했기 때문에, 石星과 심위경이 조정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명일본평화조건」을 숨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협상을 보면 진실은 그렇지 않다.

명의 사절 謝用梓、徐一貫이 5월에 규슈의 나고야名護屋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다음 달 21일, 22일의 2일간 필담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외교대표인 난젠지 승려 玄圃靈三과 정식 담판을 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에 모아진 小瀬甫庵의 『太閤記』에 의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5월 24일(일본력 23일)에 두명의 명나라 사절과 회견하고 외교승려 景轍玄蘇에게 그들과 비공식 필담을 하도록 지시했다. 필담은 그림에 관한 이야기기로부터 시작되고 점차 명과 일본의 평화조건에 언급했다. 玄蘇가 필담으로 일본의 조선 출병에 대해 「조선이 일본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즉, 조선은 일본의 「중국과 관계 수교」의 의사를 중국에 전한다고 승낙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약속을 어겼다. 일본의 조선 출병은 명을 침범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玄蘇는 명과 인척관계를 잇고 싶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청을 강조하고, 명과 「속국의 조약」을 맺고 싶다는 일본 의사를 전했다. 게다가 「为先驱伐鞑鞞」, 「粉骨碎身, 欲酬大明皇帝」라고도 함께 이야기 했다. 즉, 타타르의 구제에 조력하는 것 이외에, 몸을 가루로 하고, 대명황제에게 공헌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다. 「화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玄蘇는 밝히지 않았다. 명의 사절은 처음에 「贵国欲通中国」의 「통상」요청이라고 이해했지만, 담판이 진행됨에 따라 玄蘇가 이야기 한 「화친」은 인척관계를 잇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 이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뒤에 제기한 『대명일본평화조건』의 「大明皇帝之贤女, 可备日本之后妃事」의 효시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의 왕녀를 신부로 하는 것으로 일본이 명의 사위국이 되는 것을 꿈꿨다. 동아시아의 조공 시스템에 있어서, 명이 타국과 인척관계를 이은 전례가 없었으므로, 일본이 처음 사례가 되면 그 국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하고 명의 다른 속국을 상회한 지위를 얻게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명일본평화조건』은 늦어도 6월 21일의 담판 당일에 명나라 사절에게 제시되었다. 玄圃靈三의 담판 기록 『文禄二年癸巳玄圃和尚大明勅使筆談記錄』에 의하면, 화평 조건은 전부 7항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필로 쓴 후 두명의 명 사절에게 넘겨졌다. 그 원본과 등본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틀간의 담판기록에 의하면, 이 화평 조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7일후에 이시다 미쓰나리, 마스다 나가모리, 오타니 요시즈구, 고니시 유키나가 4명에게 건네 준 주인장관의 『대명일본평화조건』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고, 조선 영토문제에 대해서만 약간의 차이가 보여지는 것 뿐이다. 논술의 편리를 위해서 주인장관의 『대명일본평화조건』과 담판 당시의 『대명일본평화조건』을 동일시한다. 먼저 주인장관의 『대명일본평화조건』의 내용은 이와 같다.

一、和平誓约无相违者，天地从[纵]虽尽，不可有改变也，然则，迎大明皇帝之贤女，可备日本之后妃事；

一、两国年来依间隙，勘合近年断绝矣，此时改之，官船、商舶可有往来事；

一、大明、日本通好，不可有变更旨，两国朝权之大官，互可题誓词事；

一、于朝鲜者，遣前驱追伐之矣，至今弥为镇国家、安百姓，虽遣良将，此条目，伴伴[件件]于领纳者，不顾朝鲜之逆意，对大明割分八道，以四道并国城，可还朝鲜国王。且又前年从朝鲜差三使，投本[木]瓜之好也。余蕴付与四人口实；

一、四道者既返投之，然则朝鲜王子并大臣一两员为质，可有渡海事；

一、去年朝鲜王子二人，前驱者生擒之，其人非凡间不混和平，为四人度与沉[沈]游击，可皈旧国事；

一、朝鲜国王之权臣，累世不可有违却之旨，誓词可书之。

此旨，趣四人向大明敕使缕缕可陈说之者也。

이 『대명일본평화조건』의 내용은 이하에 일곱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1, 「화친」. 명나라 황제의 왕녀를 며느리로서 맞이하는 것. 2, 조공 관계의 회복. 무로마치 막부와 명의 공식조공, 민간의 호시관계 회복. 3, 명과 일본의 공식관계의 재구축. 4, 조선의 개시, 경상, 전라, 충청, 강원 4 도를 일본에 할양. 5, 조선 왕자, 신하가 인질로서 일본에 체류하는 것. 6, 조선 왕자의 귀환. 7, 조선의 요직에 있는 사람 고관들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다 (조선이 일본에 복종하는 것)

7 가지 항목 중 일본측의 의무로서 정해진 여섯번째를 빼고 일본이 타국에 대하여 권익을 요청한 것이다. 전반 3 항목은 명에 대한 것이며, 후반 4 항목은 조선에 대한 것이다. 일본은 조선을 담판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명의 사절에게 이 평화조건을 조선 국왕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명확히 요청했다.

7 가지 항목 중, 두번째, 세번째, 여섯번째는 담판의 단계에 쌍방의 공통 인식이 되고 있었다. 조공 관계의 회복을 검토하는 명에 대하여 玄圃靈三은 「乃知天朝不弃

之情、感激无他、伏乞准照旧例通朝贡商船」(하늘 아침이 우리들을 버릴 일 없고, 대단히 감격이다. 관례대로의 조공 상선의 운항 재개를 기원한다)고 대단히 정성스럽게 말했다. 일곱번째는 다섯번째의 보충 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조선이 일본에 복종하는 것. 단지, 이것에 대해서 담판으로 구체적인 언급은 되지 않았다. 담판은 주로 화친, 조선 남방에 4 도의 할양, 조선 왕자와 각료의 인질문제에 3 항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명의 사절은 이 조건은 「정리가 결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복수의 항목 삭제를 요구하고, 특히 화친의 항목을 강하게 반대하고 조정에 알려지면 담판이 무너진다고 하여, 명나라 조정으로의 보고를 거부했다. 조선 남방 4 도의 할양에 대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당초 명과 일본 양국이 조선의 팔도를 양분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것에 대하여 명의 사절은 「所示中分八道，岂我大明利其土地乎？朝鲜既为属国，则八道土地，皆我大明所属矣，欲中分之，则置朝鲜国王于何地」(조선은 명의 속국인 이상, 그 토지는 모두 명의 속지다. 양분하면 조선 국왕을 어떻게 할 것인가)고 강하게 반대했다.

명 사절의 반대를 받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남방 4도가 일본에 속하고, 북방 4도가 조선에 반환하고, 히로아키 황제가 중립의 입장에서 그 실시를 감독한다라는 새로운 안을 제기했다. 조선 왕자, 각료가 인질로서 일본에 체류하는 것에 대해서, 명의 사절은 「质朝鲜王子者, 此在朝鲜未敢必也, 待二使回答经略, 议而行之」라고 회답하고, 송응창에게 보고하고 상충부에서 검토하게 하기로 했다.

일본측은 상기의 3 항목을 반드시 모두 승낙하게 할 작정은 없었으므로, 담판 당초 3자 속에서 2자를 고르는 것을 제안했다. 1 일제의 담판으로, 玄圃靈三은 조선 북방 4도의 행방에 관해서 대명의 칙령에 응해서 반환하고, 나머지의 남방 4도의 행방은 대명의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했다. 만약 명이 조선 왕자, 신하 2, 3 명이 인질이 되는 것과 일본 왕녀를 시집 보내는 것을 승낙해 주면, 일본이 조선 남방 4도를 포기해도 좋다고 제안했다. 명 사절은 玄圃의 제안, 특히 화친에 강하게 반대하고, 그것을 조정에게 보고하는 것을 거부했다. 첫날 담판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다음날 玄圃靈三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안은 조선 왕자, 신하의 인질문제를 보류로 해서 화친과 조선 남방 4도의 할양을 계속 다루었다. 화친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조선 남방 4도의 할양을 반드시 대명황제 아래서 실현하는 것. 할양의 공식문서에 대명황제의 금인을 누르는 것이 조건으로 여겨졌다. 명까지 승낙하지 않았을 경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팔도를 정벌하기 위해서 다시 군을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군사침략을 시사했다.

일본측은 당초 담판으로 화친과 조선 왕자, 신하의 인질문제에 두 조건을 가지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려고 했지만, 명의 사절이 반대했다. 명 사절은 외교교섭을 통해 화친과 조선 남방 4도의 어느 쪽인가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일본측의 최저 라인을 밝히게 했다. 명 사절은 일본측의 화친 요청을 단단하게 거절한 뿐만 아니라, 조정에로의 보고 자체도 거부했다. 그 대신에 명 사절은 일본 측의 영토할양의 요청을 조정에게 보고하는 것을 동의했다. 이를 받아 일본측은 화친 요청을 포기하는 대신에 조선 영토의 할양을 견지했다.

명 사절 謝用梓、徐一貫이 일본에 향한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명일본평화조건』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6월 21일, 22일의 2일간에 걸치는 담판을 통해 명과 일본의 조공 관계, 공식관계의 수복, 조선 왕자의 귀환은 쌍방의 공통 인식이 되었다. 조선의 요직에 있는 고관들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언급되지 않았다. 조선 왕자, 각료가 인질로서 일본에 체류하는 것은 보류로 되었다. 명 사절은 2일간의 외교교섭을 통해 일본측의 화친 요청을 멀리했다. 한편 조선 남방 4도의 영토요청에 반대인 뜻을 나타내면서, 명 조정에게 보고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 외교교섭은 명 사절이 일본측의 강제적인 요청을 멀리하고, 담판의 화평 조건을 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시킨 점에서 결실이 있었다. 일본측에 7 항목을 넘기지 승낙하고, 심위경, 石星들이 명 조정을 속였다는 사실은 없었다.

3. 명과 조선에서의 《대명일본평화조건》 수용과 교섭조건의 변화

나고야 성 담판으로 화친, 조선 남방 4도의 두 항목이 크게 주목 되었지만 조선 왕자와 신하의 인질문제는 보류로 되었다. 명의 사절 謝用梓、徐一貫은 2일간의 외교

교섭을 통해 일본측의 화친 요청을 멀리했다. 나고야 성 담판후 『대명일본평화조건』의 교섭 조건은 완화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 『대명일본평화조건』을 둘러싼 각종 전문이 이후 조선과 명에 퍼지는 상황이 일어났다.

謝用梓、徐一貫의 조선 귀환전, 일본에서의 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심위경은 부산에 집결한 일본군의 사관에게서 『대명일본평화조건』의 일부의 내용을 7월 경략 송승응에게 보고했다. 그 내용은 「讲贡一年三次, 割与全罗一道, 银二万两(연에 세 번 조공을 하고, 전라도를 일본에 할양한다. 은 2 만량을 일본에 배상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세 조건을 지키면 조선 왕자와 3명의 신하의 귀환이 처음으로 가능해진다. 이 「조공」, 「전라도의 할양」, 「왕자와 3명의 신하의 귀환」은 모두 『대명일본평화조건』에도 언급된 항목이지만, 3군데의 차이가 있다. 첫번째는 조공의 주기.

『대명일본평화조건』에서는 조공의 주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심위경의 보고에서는 그것이 「연에 세 번」로 여겨지고 있다. 두 번째는 영토할양의 범위. 『대명일본평화조건』는 조선 남부의 경상, 충청, 강원의 4도를 영토할양의 범위로 하지만, 심위경의 보고에서는 그것이 전라 1도로 되어 있다. 당시 경상도는 이미 일본군의 점령지가 되고 있었다. 세 번째는 「은 2 만량」이 되는 조선 왕자, 신하의 몸값. 이것은 가토 기요마사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본의가 아닌 것 같다. 심위경의 발자국이 부산에서 멈추고, 謝用梓、徐一貫처럼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직접 교섭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고 내용은 『대명일본평화조건』과 겹친 곳이 있지만 실제 상황과 다른 점이 있었다.

같은 해에 7월, 명에 항복한 일본인 포로 兀兀吉奴、尼嘘兀兀은 송응창에게 일본측의 화평 조건이 「四道让天朝, 四道属日本, 方转回巢。总[纵]许封贡, 亦要攻破全罗(4도가 하늘 천조에, 4도가 일본에 속하는 것. 조공 관계가 회복해도, 전라의 점령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조공과 조선분할의 2항은 『대명일본평화조건』당초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같은 해 11월 「화친」, 「할땅割地」, 「구혼」, 「봉왕封王」, 「准貢」, 「蟒龍衣」, 「印信」의 7항목의 설이 나돌기 시작했다. 여기서 「화친」과 「화평 친선」을 가리키고, 『대명일본평화조건』에 쓰여진 명과 일본이 좋은 관계를 이룩하는 항목에 해당한다. 「구혼」은 전술한 「화친」이며 즉 인척관계의 확립을 가리킨다. 「할땅」과 「准貢」은 『대명일본평화조건』의 조선 남방 4도의 할양, 명과 일본의 조공, 호시관계의 회복을 가리킨다. 「봉왕」, 「蟒龍衣」, 「印信」은 책봉冊封을 가리키지만, 모두 『대명일본평화조건』에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 7항목설은 「화친」등의 전문傳聞을 포함시킨다.

다음해(1594년) 4월, 제독 李如松이 멋대로 「화친」을 인정했다고 塾師 諸龍光이 고발하는 일이 베이징에 일어났다. 5월 福建巡按劉芳譽가 일본에 간 상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심위경 독단으로 대명 왕녀를 일본에 내미는 것을 약속했다고 조정에 고발했다. 심위경이 이로 인해 「화친」제안의 장본인으로 여겨졌다. 만력 24년(1596년) 4월 일본의 화평 조건이 「화친」, 「할땅」, 「納質」, 「통상」의 4항목이며 「화친」의 우선 순위가 가장 높다고 하는 정보가 부산에 체류하고 있었던 책봉의 공식사절 이종성李宗城의 귀에 들어갔다. 한편 나고야 담판 기록으로부터 알수 있듯이 謝用梓、徐一貫은 담판의 최초 단계에서 일본의 화친 조건을 멀리했다. 「화친」설이 소문으로서만 있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이 전문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다고 할 수 없다. 허실반반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惟政李謙受등의 조선 외교담당자가 부산 서생포에 주재한 일본군사령관 가토 기요마사와의 거듭되는 외교교섭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가, 나고야 담판이후 『대명일본평화조건』의 교섭 조건의 변화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신빙성이 비교적으로 높다.

만력 22년(1594년) 4월, 惟政들은 처음으로 西生浦의 가토 기요마사 군영에 들어갔다. 淸正이 惟政들에게 「与天子結婚(천자와 인척관계를 맺는다)」, 「割朝鮮屬日本(조선의 영토를 일본에 할양한다)」, 「如前交隣(종래대로의 국가관계를 유지한다)」, 「王子一人入送日本永住(왕자 한명을 일본에 보내고 일본에서 영주시킨다)」, 「朝鮮大臣大官入质日本(조선의 각료고관을 인질로서 일본에 체류시킨다)」는 5항목을 제기했다. 「与天子結婚(천자와 인척관계를 맺는다)」은 전술의 「화친」에 상당한다. 「割朝鮮屬日本(조선의 영토를 일본에 할양한다)」는 조선 남방 4도의 할양을 가리킨다. 「王子一人入送日本永住」, 「朝鮮大臣大官入质日本」는, 왕자, 각료를 인질로서 일본에 체류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如前交隣」는 가토 기요마사의 사고방식이며 즉 조선이 일본에 속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이것은 전술한 조선의 각료고관들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다와 같은 의미이며, 왕자, 각료의 인질항목의 보태졌다고 보아도 좋다. 「조공」, 「호시」를 제외하고 惟正이 제기한 5항목은 『대명일본평화조건』의 기본방침과 일치하고 있다. 惟正이 실패가 없는 5항목을 낸 것은 명과 일본의 화평 협의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개월 후, 惟正이 다시 키요마사의 군영에 들어가니 키요마사가 건넨 화평 조건이 「四道中割給二道, 送王子质之(4도 중 2도를 할양하고 왕자가 인질로서 일본에 보내진다)의 2항목으로 줄어들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영토할양 문제에서 약간의 양보를 했다. 「送王子質之(왕자를 보낸다)」에 관해서, 키요마사의 부장 기하치가 惟正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汝国若取他人之子年可八九者, 假称王子而入送, 则事当速成(8, 9세의 어린이를 왕자라고 말해서 보낸다)」 이 속임수의 제안으로부터 보아서 왕자의 인질문제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고 엄격한 실사가 요구되지 않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 화평 조건에 변화가 생긴 것은 키요마사가 고니시 유키나가를 대신하고 화평 협의를 실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같은 해 12월, 키요마사는 在田、天佑의 두 승려에게 조선 외교대표 李謙受와의 외교교섭을 의뢰했다. 그 때 키요마사는 「天朝许封虽美, 于关白之心不好(천조의 약속은 좋은 것이지만 관백關白 심정은 좋지 않다)」고 함께 이야기 했다. 그리고 책봉이외 「前五条内, 有一事成之, 则必合于关白之心(전반에 5항목 중 반드시 1항목을 실현시키는 것. 관백의 바램을 이루어 준다)」고 토로했다. 키요마사가 전반 5항목에 있어서 1항목을 실현시킨다고 하는 새로운 화평 조건의 최저한을 제시했었지만, 그에 있어서 이상적인 화평 조건은 여전히 順和君 및 2, 3명의 각료를 일본에 보내는 것이며, 그리고 5항목 중 한명의 왕자를 일본에 영주시키는 것과 조선 각료고관이 인질로서 일본에 체류하는 것이었다. 왕자의 일본 체류의 대신에 키요마사가 자신의 아들을 인질로서 조선측에 건너게 하는 준비가 있다고 했다.

『대명일본평화조건』제기 후 명과 조선에 다양한 전문이 나돌았지만 모두 허실반반이었다. 惟政、李謙受등의 조선 외교담당자가 가토 기요마사와 외교교섭을 거듭했다.

그때마다 일본 측의 화평 담판 조건이 바뀌었다. 이 세 번의 화평 조건이 어느정도 나고야성 담판 후의 『대명일본평화조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4.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항복표, 「3 항목」의 약속과 『대명조선일본평화조목大明朝鮮日本平和條目』

나고야 성 담판후, 명과 일본은 평화협상을 계속했다. 만경력 23년(1595년) 1월, 명은 최종적으로 책봉의 상세를 정했다. 명의 책봉확정전후의 교섭 조건은 만력 21년(1593) 12월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항복표, 만력 22년(1594년) 12월 일본측의請封使内藤如安과 명의 「3 항목」을 둘러싼 약속, 만력 23년(1595년) 5월의丰臣秀吉朱印状 『대명조선일본평화조목』의 세가지 대표적 문서와 필담 자료로부터 알 수 있다.

송응창의 『宣諭平行長』에 언급된 「関白上章謝罪」가 이후 외교교섭으로 실행되었다. 심위경니 만력 21년(1593) 6월에 일본의 조공사절 内藤如安을 부산에서 데리고 왔을 때 『倭酋奏本』이라고 하는 책을 지참했다. 『倭酋奏本』은 「年年来进, 岁岁来朝(매년 조공을 한다)」고 명언하고, 명에로의 조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말쓰임에 문제가 있어 규범으로부터 이탈했다고 여겨졌다. 명이 그 후 심위경 다시 부산에 보내고 항복표의 재제출을 요구했다. 만력 21년(1593) 12월에 완성된 새로운 항복 조문은 이하의 내용이다.

万历二十一年十二月日, 日本前关伯臣平秀吉, 诚惶诚恐, 顿首顿首, 谨上言称谢者。伏以上圣普照之明, 无微不悉; 下国幽隐之典, 自求则鸣。兹沥卑悰, 布干天听。恭惟皇帝陛下, 天佑一德, 日靖四方。皇建极而舞干羽于两阶, 圣武昭而来远人于万国。天恩浩荡, 遍及遐迩之苍生; 日本献微, 咸作天朝之赤子。屡托朝鲜以转达, 竟为秘匿而不闻。控诉无门, 饮恨有自。不得已而构怨, 非无谓而用兵。且朝鲜诈伪存心, 乃尔虚渎宸听; 若日本忠贞自许, 敢为迎刃王师? 游击沈惟敬忠告谕明, 而平壤愿让; 豊臣行长等输诚向化, 而界限不逾。诈谓朝鲜反间, 构起战争, 虽致我卒死伤, 终无怀报。第王京惟敬旧章复申, 日本诸将初心不易。还城郭, 献刍粮, 益见输诚之悃; 送储臣, 归土地, 用伸恭顺之心。今差一将小西飞弹守, 陈布赤心, 冀得天朝龙章恩赐, 以为日本镇国恩荣。伏望陛下, 廓日月照临之光, 弘天地覆载之量, 比照旧例, 特赐册封藩王名号。臣秀吉, 感知遇之洪休, 增重鼎吕; 答高深之大造, 岂爱发肤? 世作藩篱之臣, 永献海邦之贡。祈皇基丕着于千年, 祝圣寿延绵于万岁。臣秀吉, 无任瞻天仰圣激切屏营之至, 谨奉表以闻。

이 항복표는 이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번째는 전쟁책임. 일본이 명에 대하여 「천조天朝의 적자赤子」가 되는 뜻을 조선에 전하고 표명하려고 했지만, 조선은 그것을 은닉했다. 일본은 「不得已而构怨(할 수 없이 토벌을 했다)」. 조선은 사기와 이간을 한 결과 명과 일본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항복표는 모든 전쟁책임을 조선 측에 씌우려고 했다. 두 번째는 책봉을 요구하는 것. 일본은 「天朝龍章賜(천조부터 용龍의 장章을 받는다)」, 「以為日本鎮國恩榮(일본 나라를 다스리는 은혜

와 번영으로 한다)」。 세 번째는 조공 관계의 수복을 요구하는 것. 일본은 명에게 「世作藩籬之臣，永獻海邦之貢」이며 영원히 바다의 나라로서 헌상한다고 맹세했다.

일본이 항복표로 조선의 전쟁책임을 비판하는 동시에, 명 측과의 봉공관계 재확립 요청을 주장했다. 『대명일본화평조건』의 「공시」로부터 항복표의 「봉공」으로 변한 것은 명 측에 「先封後貢(권봉을 한 후, 조공 관계를 확립)」이라는 의사가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항복표는 학계에서 고니시 유키나가와 심위경의 공모에 의한 위작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고니시 유키나가 薊遼總督孫鑣遼에의 『答薊遼總督』에서 「書內又疑先日表文不真，似爲過當。蓋不知有國有君有禮有法者，文書印信豈容假借？理無假借，復何辨哉」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은 「有國有君有禮有法」 이기에 문서와 인감, 편지는 절대로 위조하지 않는다고 표명하고 있다. 항복표는 확실히 형식상 정돈된 것이며 그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항복표의 「봉공」문제는 명 조정에서 오래 논의되고 있었다. 고니시 유키나가 가 장 먼저 심위경에게 「조공」을 제안했다. 명 측이 『병부첩』에서 「先封後市(貢)」이라고 회답하고 있다. 송응창이 『宣諭平行長』에서 「봉」만을 언급한 후 「봉공」의 양쪽에 응했다. 송응창의 「봉공」주장이 조정에서 많은 비판을 초래했기 때문에 「且与之封，使其歸國，貢則封後二三年，視其順逆若何，另行議處」에 바뀌고 「先封後貢」쪽에 시프트했다. 송응창 다음에 조선의 군무를 이어 받은 薊遼總督 顧養謙이 「封貢并許」외에도 「開市寧波」를 주장했다.

고(顧)는 「封貢并許」로 십년간의 평화를 보증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그렇지 않으면 「封貢并絕(봉공의 양쪽을 그만 둔다)」가 되고 조선을 포기하고 서쪽에서 압록강을 지킬 수 밖에 없다고 고는 명언했다. 「封貢并許」과 「開市寧波」주장이 조정에서 맹반대를 받았기에 顧養謙은 이를 그만 둔다고 전했다. 明神宗이 「封貢并罷」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후 明神宗이 「不許貢但往市」안을 제시하고 「封貢并罷」 후에 「호시」의 실시를 검토했다. 兵部尚書石星이 「不敢輕議」라 하고 兵科給事中吳文粹이 「不宜輕開」로 했기 때문에 明神宗은 자기의 제안을 단념했다.

명이 최종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책봉한다고 결정한 것은 조선 국왕이 일본의 책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일본의請封使內藤如安이 만력 23년(1594년) 12월에 베이징에 오고 필담을 통해서 명과 「3항목」의 약속을 주고 받았다. 이 「3항목」은 명이 「釜山倭衆盡數退歸(부산의 일본 주둔군이 모두 철퇴하는 것)」, 「一封之外，不許別求貢市(봉의 이외의 공시를 요구해서는 안되는 것)」, 「修好朝鮮，共爲屬國，不得輕肆侵犯(조선과 수교하고 서로 명의 속국이 되며 조선을 침범하면 안된다)」의 세 화평 조건이었다.

항복표에 있었던 「봉공」요청 중 명부터 승낙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봉」만이었다. 「封貢并罷」 보다는 어느정도 완화되었지만 이전에 명이 약속한 「先封後市」도 「封貢并許」와 비교하면 대단히 엄격한 것이다.

內藤如安의 기술에 의하면, 그가 명과의 사이에 「3항목」의 약속을 주고 받은 것은 「前日行長有稟帖上孫老爺，一一听命，不敢有違天命。此系大事，秀吉有命行長，行長有書小的，方敢如此對答」, 즉 고니시 유키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니시 유키나가와 內藤如安 사이에 「매월 20일마다 서간을 주고 받는다」

고 하는 통신기간에 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 나이토의 이야기는 그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内藤如安이 명과 협의를 체결하기 전에 고니시 유키나가는 薊遼總督孫鑣遼에게 서간을 보내고 명 측이 요청한 「3 항목」에 대하여 명확한 회답을 했다.

第一件，撤兵归国。先兵屯王京，沈游击一言之约，退至釜山千有余里，今釜山相去对马半日之程，果有天使来，不难尽撤。

第二件，不得因封又求贡市。封者，天朝之恩，贡者，小邦之礼，今但施恩而不责礼，更为体恤。

第三件，一封之后，不得后犯朝鲜。然兵出朝鲜求通上国，今得封矣，复犯何为？此皆可以听命者也。

孫鑣은 「大约称三事尽皆听命，惟留从倭数队等候封使，据其辞意，似近恭顺」라고 하며 일본측이 제출한 3 항목이 명의 뜻을 따르고 어의도 정중하다고 생각했다. 景轍玄蘇가 같은 해 12월 22일에 기초起草한 서간의 내용은 앞의 한 통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蒙差叶参军，沈、叶二镇抚赉榜文来宣谕准封的信，实小邦大幸也。向因沈游击讲说朝鲜为天朝属国，所以不敢再与为仇，故尽退还城郭、地土，送回王子、陪臣，自王京至釜山，共遗粮二十余万石，尽行送与天朝，退居海角，自运粮草用度，只所吃是朝鲜野水而已，不敢复有他意。蒙许封事，久不见妥，而来论又教尽数收兵过海，曩尔小邦，焉敢不从？即当令大众还国，止留兵马二三千在此通信，迎接天使，并不扰害朝鲜地方。若将兵马尽数过国，又恐朝鲜反要乘机执仇，故不得已羈留异域，淹淹待命。伏望仁慈作主转奏，早赐救命，速得杜绝归国，感恩激切。余付回使舌端。

玄蘇가 기초한 이 통지는 일본군 철퇴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봉공을 요구하지 않는 것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이에 접한 孫鑣은 걱정을 품고 고니시 유키나가의 연락이 「似可信(신용할 수 있다)」, 景轍玄蘇의 연락은 「이후 포석이 될 것 같은」 의도를

비친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책봉을 받은 후 요구가 점차 공시에 미치는 것이 아닐까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孫鑣의 걱정에는 근거가 있었다. 「既封之后, 必渐及贡市」는 일본 외교담당자들의 외교수단이다. 명이 책봉상세를 정한 후 심위경이 만력 23년(1595년) 4월 하순에 다시 부산에 오고 일본 주둔군을 향해 3항목에 관한明神宗의 책봉칙유를 선고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곧 일본에 되돌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고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시는 『대명조선여일본화평조목』의 주인공장이다. 동 지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외교대표인 고니시 유키나가와 데라사와 마사나리를 명령의 수취인으로 같은 해 5월 22일에 발행되었다. 그 내용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한 명, 조선, 일본 세방의 화평조건에 관한 새로운 주장이다.

一、沈游击到朝鲜熊川, 自大明之条目演说之云云, 依大明钧命, 朝鲜国于令恕宥者。朝鲜王子一人渡于日本, 可侍大阁幕下, 然则朝鲜八道之中四道者可属日本者, 前年虽述命意, 王子到本朝近侍, 则可付与之。朝鲜大臣两人为轮番, 可副王子之事;

一、沈游击与朝鲜王子同车马至熊川, 则自日本所筑之军营十五城之中十城即可破之事;

一、依大明皇帝恳求朝鲜国和平赦之, 然则为礼仪赉诏书, 大明敕使可渡于日本。自今以往, 大明、日本官船、商舶于往来者, 互以金印勘合, 可为照验事。

앞서 나온 『대명일본화평조건』과 달리 이 주인공장은 『대명조선여일본화평조목』이라고 표제가 바뀌었다. 교섭 대상은, 명뿐만 아니라 조선도 포함되었다. 2년전의 화평조건과 비교하면 크게 조정되었다.

1, 영토문제. 조선 남방 4도를 포기하는 대신 조선 왕자, 신하가 인질로서 일본 체류할 것을 견지했다. 즉 영토문제를 인질문제에 바꿔 넣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이 왕자를 일본에 보내면 조선 남방 4도를 돌려주고 속지의 형식으로서 조선 왕자에게 하사할 수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화친 요구가 거부되고 조선 남방 4도의 영토요청도 지지를 얻을 수 없었기에, 조선왕자와 신하를 인질로 하고 조선과의 중주국 관계의 확립을 하려 했다. 이것이 실현되면 일본은 명 다음에 조선의 두번째 중주국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

2, 인질과 철병문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인질과 영토를 바꾼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왕자와 심위경이 웅천의 일본군병영에 도착하면 일본이 곧 15개 외성倭城 중 10개 외성을 부순다고 말했다. 사실 조선이 일본에 왕자를 보내지 않았는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예정대로 대부분의 외성을 폐기했다. 이 사실은 도요토

미 히데요시가 성의 있게 군 철퇴에 열을 올렸고 그리고 왕자, 신하의 인질문제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조선에서 완전한 철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봉공문제. 명의 「봉」에 대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특히 이의를 말하지 않았지만 대명척사가 책봉의 예禮와 조서詔書를 일본에 가지고 오는 것을 요청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요청한 「금인감합金印勘合」은 분명히 「봉」의 범주를 넘고 있다. 소위 「금인」은 명이 속보의 형식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일본국왕」의 금인을 하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책봉을 통해서 「일본 국왕」의 이름을 얻는 동시에 「감합」을 실시하고 양국의 「관선, 상선」의 「왕래」가 합법화되고 공식적으로는 「조공」과 민간의 「호시」의 회복을 도모하려고 했다. 고니시 유키나가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明神宗의 칙유 내용을 보고할 때 「一封之外, 不许别求贡市」를 회피했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공시」회복의 가능성을 깊이 생각하고 고니시 유키나가와 데라사와 마사나리에게 사후에 「공시」를 실현시키려고 지시했다.

사실 明神宗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로의 칙유에 책봉 후의 조공 문제에 언급하고 「至于贡献, 固尔恭诚, 但我边海吏惟知战守, 风涛出入, 玉石难分, 效顺既坚, 朕岂责报, 一切免行, 俾绝后衅」이라고 함께 이야기 했다. 즉 명의 해방병사들은 방어의 임무를 지고 바람과 물결이 강한 동해를 경유하는 일본의 조공 단체에 잘못하고 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두 통행 금지로 하고 있었다. 실제로 일본측이 제기한 조공 경로는 해로가 아니라 조선경유의 육로이었기때문에 칙유 거부의 이유는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명 병부는 일본이 책봉완성 후에 謝恩使를 명에 파견할 때 「除使臣外, 人不得过三百, 船不得过三只, 先到对马岛, 候旨定数进京」라고 정했다. 조선경유의 육로가 謝恩使의 경로로 정해졌다. 그것이 조선이 「虽不许贡, 而贡在其中」이라는 인식을 가진 원인이었다. 한편 명 외교관료들이 일본측에 「後求貢(봉의 뒤에 공을 요구한다)」책을 강구했다. 예를 들면 遊擊陳雲鴻이 만경력 23년(1595년) 1월에 부산의 일본군 병영에 들어간 후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准封则不必要贡, 当慢慢请之, 未为不可. 既封之后, 尔国当遣使奉土宜称谢, 因此而恭谨请之, 则天朝无不准之理. 何必忙忙一时要之乎」라고 이야기하고, 「天朝无不准之理(천조가 허가하지 않을 리가 없다)」. 薊遼總督孫鏞도, 심유경이 일본 측과 교섭했을 때 「令其谢恩时以巧术求贡市」라고 지적했다.

『대명조선여일본평화조목』은 「조선 국왕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진 「대명일본 화평조건」하고 달리, 명과 일본만이 아니라 조선도 교섭 대상이 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에 대하여 명의 책봉을 요구할뿐만 아니라 사후에 「공시」관계의 확립도 요구했다. 이것은 항복표의 방침과 일치하고, 孫鏞의 「既封之后, 必渐及贡市」의 걱정하고 부합된다. 한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대하여, 남방 4도를 포기하는 대신에 「조선 왕자, 신하가 인질로서 일본에 온다」를 견지했다.

이로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항복표의 제출, 内藤如安과 명 사이 「3항목의 약속」을 경과하고 명이 최종적으로 「只封不贡(봉만을 허하고 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정책을 정한 것을 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明神宗의 책봉칙유를 알고, 『대명여조선일본평화조목』을 가지고 『대명일본화평조건』을 바꾸고, 이미 멀리

한 화친 요청에 더해서 조선 남방 4도의 포기도 표명했다. 그 대신에 공시의 회복, 조선 왕자와 신하의 인질문제라는 두 조건을 유보로 했다. 그 사이에 조선 왕자와 신하의 인질문제의 실시에 관해서 일본은 계속되어 명, 조선과 교섭을 했지만, 공시의 재개는 책봉완성 후 謝恩使者의 베이징 파견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5. 신하의 일본 파견을 둘러싼 교섭

『대명조선일본화평조목』에 의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같은 해 5월 22일에 고니시 유키나가와 데라사와 마사나리에게 조선왕자, 신하의 방일알선을 명했다. 고니시 유키나가 5월 26일에 출발 후 한번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소환되었다. 그 원인의 상세한 것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조선에 되돌아온 후 곧 명, 조선과의 교섭에 착수하지 않고, 그대신 일본군의 철퇴와 명 책봉使의 수납 준비에 착수하고 있었다. 이 문제에 관한 정식교섭은 명 권봉使 이종성이 부산의 일본군군영에 들어간 후에 시작한 것이다. 명 권봉使의 동향을 보고하러 일본에 돌아간 柳川調信의 최신정보에 의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화평 조건을 「須煩朝鮮二三陪臣(조선에 23명의 신하)」이 방일하고 「面修旧好, 永相和睦(구교를 회복, 영원한 화목을 꾀한다)」고 조정했다. 『대명조선일본화평조목』 원본에서는 조선 왕자, 신하의 방일이라고 정했지만, 柳川調信이 부산에 돌아왔을 때, 신하만이 명 권봉使와 함께 방일하고, 구교를 회복한다고 수정되었다. 그 전의 가토 기요마사 표현에서는 전반 5항목 중의 1항목의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 그 중 조선 각료의 인질로서의 방일은 실현 허들이 가장 낮다. 아마 이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저한 요청이라고 생각된다. 단 그 때 요청 대상은 보통 관료가 아니라 지위가 높은 조선 각료였다. 신하의 랭크에 대해서 명과 일본의 화평과는 각자 주장을 전개하고 있었다. 심위경은 「不須大官, 只收出一武官, 将就送去亦足(무관 한명으로 좋다)」, 그러나 景轍玄蘇는 해당 관료의 랭크는明朝六部尚書의 두명 「判書」 또는 「총병」에 상당하는 것이 아니면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다. 그동안의 교섭에는 불명점이 남는다.

그 후의 외교교섭은 조선 신하의 방일을 둘러싸서 전개되었다. 일본과 조선의 교섭이외, 명 측의 외교관료도 몇 번이나 교섭에 합류했다. 심위경이 조선 국왕의 의사를 확인한 뒤, 그것을 병사부에 보고했다. 명 책봉사의 이종성, 楊方享은 조선측에 이를 받아들여기를 권했다. 조선 측은 시종 강한 태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명 병부는 조선이 신하를 일본에 보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병사부는 답변으로 「其陪臣修好之说, 待封事后谢恩之日经过朝鮮, 或于对马岛, 或于釜山, 会约证盟, 亦无不可。如朝鮮即差陪臣随册使渡海, 又当听便, 固不可絶, 亦不可执(신하의 파견은 사후 사은 때라도 좋다)」고 쓰고, 책봉 뒤 조선의 부산이나 일본의 대마도에서 조선의 신하가 일본의 사은 사절과 「会約証盟」 하면 좋다는 견해를 보였다. 조선이 일본의 신하 파견을 스스로 하려고 하면 「又当听便(그것에서 좋다)」고 한다. 조선은 최초 신하의 일본 파견을 단단하게 거부했지만, 명과 일본의 외교관료의 거듭되는 설득에 따르고, 랭크가 낮은 黃慎使節團(동칭 조선통신사)을 파견하고, 명의 책봉사와 함께 일본에 간 것이다.

6. 왕자의 인질로서의 방일을 둘러싼 교섭

만력 24년(1596년) 9월 2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성에서 명 사절 楊方享, 심위경에 의한 책봉을 받았다. 책봉식전 전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두 차례나 화를 냈다. 명의 책봉은 사실상 실패했다.

첫번째 화는 책봉전이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島津兵庫頭 (島津義弘) 에 보낸 서간 및 小早川隆景이 羽兵 (島津義弘) 에게 보낸 서간 (모두 9월 7일의 날짜)에 의하면, 조선 왕자의 방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예상과 다른 결과에 격노했다. 조선 왕자를 파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事事轻我甚矣(조선이 일본측을 가볍게 본다)」고 조선을 비판하고 조선통신사와 만나지 않는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야 柳川調信의 진술에 의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예전부터 조선 왕자가 방일하지 않다고 예상한 보고를 받고 있었고 그후에도 변화는 없고 예정대로 조선 통신사와 「速見(짧은 회견)」을 할 예정이었다. 변심은 책봉식전의 직전이였다. 두번째의 화는 책봉식전종료 후 얼마 안될 때이였다.

9월 2일과 9월 3일, 심위경은 조선과의 응어리를 버리자고 두번에 걸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진언했지만, 후자의 불쾌감을 초래했다. 9월 5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五奉行의 한사람인 前田玄以에, 사카이에게 향하고 심위경과 사은표 문장의 작성에 대해서 합의를 하도록 지시했다. 심위경이 이때 조선에 주재하는 모든 일본군의 철퇴를 요청했다. 이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격노를 초래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겉으로는 어디까지나 명의 권위를 승복하고 명과 결렬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進天朝別幅』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前年自朝鮮使节来享之时，虽委悉下情，终不达皇朝，尔来无礼多多，其罪一也；

朝鮮依违约盟，征讨之军中，二王子并妇妻以下虽生擒之，沈都指挥依传敕命宽宥之，即先可致谢礼者，分之宜也，天使过海之后历数月，其罪二也；大明、日本之和交，依朝鮮之反间经历数年，其罪三也。为使本邦之军士生劳苦、久送光阴者，初知为皇都计略也。朝鮮后于天使来，以是观之，悉知朝鮮谋诈。件件罪过不一，自大明可有征伐耶？

自本邦可征讨耶？盖又可随敕命者也。

『進天朝別』은, 『대명조선일본평화조목』의 명과 일본의 「공시」 문제에 언급하지 않고, 공격의 방향을 조선을 향해서 책봉의 실패를 조선의 책임으로 하고 있다. 『進天朝別』은 조선의 「세 가지 죄」를 제기하고 조선을 처벌하도록 명에 요청했다. 그와 동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에로의 사은사 파견을 보류하고 「必先通朝鮮后,

次可遣使天朝」라고 칭하고, 명 측에 외교 압력을 가했다. 동시에 조선을 다시 침공하는 준비를 갖추도록大名들에게 지시를 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함께 이야기 한 「先通朝鮮」은 일본과 조선의 양자관계를 잘 대처하는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이 일본에 왕자를 파견하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위성을 확립시키는 것이다. 『대명조선일본평화조목』 원본에도 같은 주장이 있었다. 柳川調信이 부산에 되돌아온 후 「二三陪臣同渡, 面修旧好(2, 3 명의 신하가 방일하고 구교를 수교한다)」고 바뀌고, 그 이후의 외교교섭은 신하의 방일을 중심으로 전개한 것으로, 왕자가 인질로서 방일하는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柳川調信에 의하면 책봉식 전후의 급변은 「不知谁人谗间而中变(누군가에 이간되어 급변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데라사와 마사나리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다음과 같이 말 했다. 「今此事与行长輩, 终始力主, 毕竟乖违若此. 天朝及朝鮮, 必以我輩, 为饰诈相欺, 我輩何面目见之乎? 男儿生世间, 受此丑名, 宁欲死于此也」. 데라사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의적으로 바뀌고 신용을 잃고 사기의 오명을 초래했다고 인식했다.

왕자의 인질문제를 둘러싼 이후 교섭 단계에서 고니시 유키나가 「王子一往则更无它事矣(왕자만 오면 모두가 해결된다)」, 「只令来谢, 放还之意可也(사죄만 하면 그 자리에서 돌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즉 왕자가 방일만 하면 좋다, 방일후에 즉시 조선에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심위경에게 왕자의 인질문제에 알 선을 의뢰했다. 심위경은 겐으로는 일본측에 「我当替尔稟天朝请罪朝鮮, 必将有以处之(여러분들 대신에 조선을 처벌하도록 천조 조정에게 보고한다)」고 하면서 조선측에는 「我则在这里死不辞, 到京里死亦不辞, 朝鮮王子, 岂有许遣之理? 此则决不可成, 我不敢谎说也(조선 왕자가 파견될 까닭이 없다)」고 표명했다. 심위경은 명 정치에 관한 인식으로부터 명이 조선 왕자의 일본 파견을 동의할 리가 없다고 보고 있었다. 사실 명의 속국으로서 조선과 일본의 관계 조정은 명의 조공 시스템의 틀로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선 측이 일본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天朝必令遣大臣、王子」라고 하는 사태를 걱정하고 있었다. 명 측에는 그러한 의도는 없었다. 병부는 조선이 「礼文当修」이지만 그것은 「令陪臣举行」, 즉 신하가 가게 하면 충분하다는 견해이었다. 그 보탬 라인은 조선 신하가 일본에 가고 수교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이 「王子必不可遣(왕자를 파견하면 안된다)」, 일본이 「王子必不当索(왕자의 파견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었다.

다음해 (1597년) 1 월초 明神宗의 대처안은 다음과 같다.

该部(兵部)便行文与日本国王撤还釜兵以全大信, 又行文与朝鲜国王即差陪臣以修

交好, 谢恩表文还令日本使臣同杨方亨先来复命, 沈惟敬待两国事完回还

明神宗은 조선이 일본에 왕자를 파견하는 것에 찬동하지 않고 대신에 조선이 신하를 일본에 파견하고 일본과 수교한다는 절충안을 조선 측에 제시했다. 명이 일본측의 왕자인질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에 조선측에 일본에 신하를 보내고 일본과 수교하는 것을 지시한 것은 대일화평 조건으로 타협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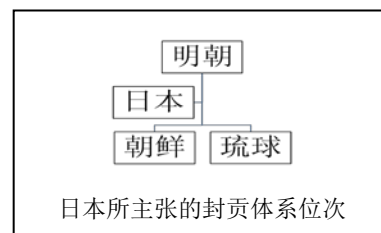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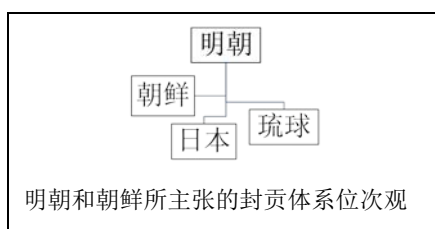
明神宗의 성지가 하달되고 얼마 안되는 1월 중순, 일본군 가토 기요마사가 7000 명을 인솔하고 조선에 상륙하고 조선에 군사위협의 태세를 전개했다. 반달 후, 일본군의 동향이 베이징에 전해져 명의 九卿科道會議가 열렸다. 조정의 논의에서 전쟁을 주장하는 세력이 주류가 되고 평화해결을 주장하는 세력은 점차 힘을 잃었다. 明神宗은 조선에 군사지원하는 것을 결정했다. 그 후 외교활동에 있어서 일본의 외교관료가 표면상은 자국이 명의 조공 시스템 아래의 「소국」이라고 하는 억제한 듯 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한쪽에서 명이 일본과 조선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명을 육박했다. 이를 명이 받아들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나가며

이상의 실증 고찰을 통해 전쟁 중에 「기만외교」가 생겼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학설이 틀렸다는 것을 안다. 당시의 외교교섭 문제는 주로 명과 일본, 일본과 조선의 양자관계에 존재했다.

명과 일본의 관계에 관해서, 일본측은 명과의 인척관계의 체결을 통해 자기의 국제지위의 향상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측의 의도가 최초의 단계에서 나고야에 感謝用梓、徐一貫들에게 거절당했다. 일본 측의 또 하나의 요구는 「구공」이며 즉 무로마치 막부시대와 명의 「봉공」 관계에로의 복귀다. 「봉공」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전개되었지만 명은 최종적으로 「봉」만을 인정했고 「조공」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때까지의 「봉공」양쪽 모두 인정하지 않을 방침보다는 완화되었지만 「봉」을 먼저 실시하고 그리고 「공」의 실시에 옮겨지는 또는 「봉」과 「공」의 양쪽을 인정했다고 하기 이전의 교섭 단계의 승낙과 비교하면 대단히 엄격한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명조선일본평화조목」으로 「봉」을 받아들였지만, 책봉 후에 명과의 조공 관계의 확립을 바랐다.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 관해서, 명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개입하기 전 일본은 이미 조선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이 명에 거듭되는 영토요구를 들이댔다. 인척관계의 요청이 명 측에 거부된 후 일본 측은 조선 영토의 획득을 통해서 보상을 얻고 싶었지만, 모두 명 측에서 승인을 얻을 수 없었다. 明神宗의 책봉칙유를 얻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일조선일본평화조목』을 내고 평화조건으로 다시 타협을 보이고 조선 영토요구의 철회를 정식으로 발표했다. 한편 조선 왕자, 각료의 인질을 가져서 동아시아 평화의 유지를 하려는 동시에, 조선 남방 4도를 왕자의 속지로써 조선에 반환하고 일본이 명에 뒤잇는 조선의 또 하나의 종주국이 된다고 하는 요청은 양보하지 않았다.



일본의 외교활동은 명의 조공 시스템에 복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조선에 대한 우위성을 확립하고 자기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을 내재시키고 있었다. 명의 조공 시스템 아래서 일본과 조선의 관계 조정은 명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명은 책봉실패 후 일본에 신하를 보내고 관계 수복을 도모시키는 지시를 조선 측에 내보냈을 뿐, 왕자를 인질로서 보내라고 하는 일본 측의 요청을 거절했다. 일본이 군사위협을 어른거리게 하면 명은 즉시 군사적 대항 자세를 보였다. 이렇게 일본과 조선의 관계 조정이 어려운 것 이외에 현행 조공 시스템 아래서 일본이 조선에서 우위적 입장에 있는 것을 명이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 것이 명과 일본 쌍방이 새로운 타협점을 찾을 수 없었던 큰 요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평화문제는 결국 다시 무력에 호소하게 되었다.